

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

[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]

1.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아세안프론티어스 증권투자신탁[H](주식-재간접형)
2. 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
3. 정정사유:
 -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이익금 분배 시 매매이익 및 평가이익 유보)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2 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업데이트	생략	연혁 추가
제 2 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내용업데이트	생략	운용현황 작성일 기준 업데이트
제 2 부. 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	<p>가. 이익배분</p> <p>① 투자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</p> <p>②~④ 생략</p>	<p>가. 이익배분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(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)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.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“ 零 ”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</p>

			<p>② ~④ 현행과 같음</p> <p>※ 2016년 11월 이후 매년 결산·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. 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, 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·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
제 2 부. 별첨 1. 2. 모집합투자 기구의 연혁	모펀드 연혁 업데이트	생략	연혁 추가
제 2 부. 별첨 1. 3. 모집합투자 기구의 운용전문인력	내용업데이트	생략	운용현황 작성일 기준 업데이트
제 3 부. 3. 집합투자기 구의 운용실적	내용업데이트		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제 4 부. 1.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	내용업데이트	생략	<p>라. 운용자산규모</p> <p>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</p>

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

[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]

1.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아세안프론티어스 증권투자신탁[UH](주식-재간접형)
2. 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
3. 정정사유:
 -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이익금 분배 시 매매이익 및 평가이익 유보)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2 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업데이트	생략	연혁 추가
제 2 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내용업데이트	생략	운용현황 작성일 기준 업데이트
제 2 부. 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	<p>가. 이익배분</p> <p>① 투자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</p> <p>②~④ 생략</p>	<p>가. 이익배분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(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)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.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“ 零 ”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</p>

			<p>② ~④ 현행과 같음</p> <p>※ 2016년 11월 이후 매년 결산·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. 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, 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·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
제 2 부. 별첨 1. 2. 모집합투자 기구의 연혁	모펀드 연혁 업데이트	생략	연혁 추가
제 2 부. 별첨 1. 3. 모집합투자 기구의 운용전문인력	내용업데이트	생략	운용현황 작성일 기준 업데이트
제 3 부. 3. 집합투자기 구의 운용실적	내용업데이트		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제 4 부. 1.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	내용업데이트	생략	<p>라. 운용자산규모</p> <p>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</p>

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

[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]

1.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차이나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[H](주식-재간접형)
2. 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
3. 정정사유:
 -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이익금 분배 시 매매이익 및 평가이익 유보)
 - 모투자신탁 내의 일부 다른 자투자신탁 삭제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2 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업데이트	생략	연혁 추가
제 2 부. 5. 운용전문인력 에 관한 사항	내용업데이트	생략	운용현황 작성일 기준 업데이트
제 2 부.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라. 모자형 구조	모투자신탁 내의 일부 다른 자투 자신탁 삭제	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 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. -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[UH] (주식-재간접형) -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[H] (주식-재간접형) -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30 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 (삭제)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에 관한 사항]	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 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. -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[UH] (주식-재간접형) -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[H] (주식- 재간접형)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에 관한 사항]

		-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[UH] (주식-재간접형) -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30 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 (내용 삭제)	-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[UH] (주식-재간접형)
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모투자신탁 내의 일부 다른 자투자신탁 삭제	다.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(연간, %) -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[UH] (주식-재간접형) -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30 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 (내용 삭제)	다.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(연간, %) -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[UH] (주식-재간접형)
제 2 부. 14.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	가. 이익배분 ① 투자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 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 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관 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 서 세액을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 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 ②~④ 생략	가. 이익배분 ① <u>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(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)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.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관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“ 0 ”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</u> ② ~④ 현행과 같음 ※ 2016 년 11 월 이후 매년 결산 · 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. 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, 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, 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

			<u>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u>
제 2 부. 별첨 1. 2. 모집합투자 기구의 연혁	모펀드 연혁 업데이트	생략	연혁 추가
제 2 부. 별첨 1. 3. 모집합투자 기구의 운용전문인력	내용업데이트	생략	운용현황 작성일 기준 업데이트
제 3 부. 3. 집합투자기 구의 운용실적	내용업데이트		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제 4 부. 1.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	내용업데이트	생략	라. 운용자산규모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
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

[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]

1.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차이나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[UH](주식-재간접형)
2. 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
3. 정정사유:
 -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이익금 분배 시 매매이익 및 평가이익 유보)
 - 모투자신탁 내의 일부 다른 자투자신탁 삭제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2 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업데이트	생략	연혁 추가
제 2 부. 5. 운용전문인력 에 관한 사항	내용업데이트	생략	운용현황 작성일 기준 업데이트
제 2 부.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라. 모자형 구조	모투자신탁 내의 일부 다른 자투 자신탁 삭제	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 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. -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[UH] (주식-재간접형) -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[H] (주식-재간접형) -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30 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 (삭제)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에 관한 사항]	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 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. -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[UH] (주식-재간접형) - 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[H] (주식- 재간접형)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에 관한 사항]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[H] (주식-재간접형) - 배어링 차이나 셀렉트 30 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 (내용 삭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[H] (주식-재간접형)
제 2 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모투자신탁 내의 일부 다른 자투자신탁 삭제	<p>다.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(연간, %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[H] (주식-재간접형) - 배어링 차이나 셀렉트 30 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 (내용 삭제) 	<p>다.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(연간, %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자투자신탁[H] (주식-재간접형)
제 2 부. 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	<p>가. 이익배분</p> <p>① 투자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</p> <p>②~④ 생략</p>	<p>가. 이익배분</p> <p>① <u>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(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)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.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“ 0 ”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</u></p> <p>② ~④ 현행과 같음</p> <p>※ 2016 년 11 월 이후 매년 결산 · 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. 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, 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, 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</p>

			<u>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u>
제 2 부. 별첨 1. 2. 모집합투자 기구의 연혁	모펀드 연혁 업데이트	생략	연혁 추가
제 2 부. 별첨 1. 3. 모집합투자 기구의 운용전문인력	내용업데이트	생략	운용현황 작성일 기준 업데이트
제 3 부. 3. 집합투자기 구의 운용실적	내용업데이트		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
제 4 부. 1.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	내용업데이트	생략	라. 운용자산규모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